##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35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안규백・박해철・조 국

장종태 · 염태영 · 송옥주

천준호 · 서미화 · 김영환

임광현 · 김준혁 · 오세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 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 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를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			
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	3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			
록할 당시 이미 <u>자녀 및 손자</u>	<u></u> 자녀가 사		
<u>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u>	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u>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u>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		
	<u>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u>		
	명도 승계 대상이 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2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u>다만, 손자</u>	<단서 삭		
<u>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u>	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삭 제> 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 명
-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 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 ⑥ (생 략)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